

야음제1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수신자 수신처 참조

참 조 업무담당자

제 목 번영로 센텀파크 에일린의 뜰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일정변경 안내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에서 공급 예정인 ‘번영로 센텀파크 에일린의 뜰’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특별공급청약일정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안내드리오니, 특별공급 대상자분들에게 당 조합의 분양정보 전달 및 해당 주택형에 대한 추천명단을 2021. 7. 1.(목)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번영로 센텀파크 에일린의 뜰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1부. 끝.

야음제1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수신처: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복지과,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담당자

연락처

정용주

010-6304-9625

공문번호 : 야음1가로 21-27 (21. 06. 14. 발송)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17, 106호

e-mail : seri9677@nate.com

▣ 장애인 배정세대

구분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추천	예비
	추천	예비	추천	예비	추천	예비		
59	1	3	0	0	0	0	1	3
70A	1	3	0	0	0	0	1	3
70B	1	3	0	0	0	0	1	3
84A	1	3	1	3	0	0	2	6
84B	1	3	0	0	0	0	1	3
소계	5	15	1	3	0	0	6	18

번영로 센텀파크 에일린의 돌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57-7 일원
- 공급규모 : 지하2층 ~ 지상27층 2개동 총 191세대
- 입주예정 : 2024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 일반분양 184세대 중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자 91세대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의 10%범위 내 공급

주택형	기관추천(85㎡이하 세대수의 10%)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합 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59.8432	1	3	1	3	1	3	1	3	1	3	5	15
70.3274A	1	3	1	3	1	3	1	3	1	3	5	15
70.1712B	0	0	0	0	0	0	1	3	0	0	1	3
84.0887A	1	3	1	3	1	3	2	6	1	3	6	18
84.3360B	0	0	0	0	0	0	1	3	0	0	1	3
합 계	3	9	3	9	3	9	6	18	3	9	18	54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지방광역시에 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분양가 :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6.24.(목)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www.centumpark-eileen-us.com)
건본주택 개관일	2021.06.25.(금)		번영로 센텀파크 에일린의 돌 건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1.07.05.(월) 08: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건본주택 방문청약	2021.07.05.(월) 10:00 ~ 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능한 자에 한함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2021.07.14.(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계약 기간	2021.07.26.(월) ~ 2021.07.28.(수) 3일간		번영로 센텀파크 에일린의 돌 건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 신청이 원칙이며, 인터넷 청약계층(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 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에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급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요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보증 : 청약보증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m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요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보증 : 청약보증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m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울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div>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추천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55%;">관련법규</th> <th style="width: 30%;">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가유공자</td> <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보훈지원청 보상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보훈지원청 보상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td> <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근로자</td> <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울산보훈지원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울산보훈지원청 보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울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울산보훈지원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울산보훈지원청 보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울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당첨자 동호수 결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예비 입주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및 견본주택위치, 분양문의

현장 위치	견본주택 위치
	 <p>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1-5번지</p>
<p>울산광역시 남구 아음동 357-7번지 일원</p>	<p>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2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1-5번지)</p>
<p>분양문의</p>	<p>☎ 052-211-3111 (변영로 센텀파크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p>

※ 청약일정 및 공급세대수, 분양일정 등 인허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영로 센텀파크 에일린의 뜰 홈페이지(<http://www.centumpark-eileen-us.com>) 또는 ☎ 052-211-31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